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7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8. .  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시·군·구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「아동복지법」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구의 책무성 강화와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근거조항 변경(안 제1조)
- 나. 상위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- 다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기관 정비(안 제6조제1항, 안 제6조제2항)
- 라.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 이관(안 제9조제2항)
  - 1) 성동구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 →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, 별첨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0. 7. 7. ~ 2020. 7. 27.)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제1항”을 “「아동복지법」”으로 한다.  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) ① 구청장은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 제4항에 따라 1명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
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으로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을 각각 “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

##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시·군·구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「아동복지법」 개정으로 ‘아동학대전담공무원’ 임용에 대한 조항 신설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‘아동학대전담공무원’ 임용 조항 신설로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발생하나,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. 그 외 개정 조문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 발생 없음

### 4. 작성자

- 아동청년과 사회8급 김현주 (연락처 02-2286-6632)

## < 관 계 법 규 >

### □ 아동복지법

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
2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·교육·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
3.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·운영
4.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 1. 28.>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4. 7.>

1.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2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·조사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(이하 "아동학대전담공무원"이라 한다)을 두어야 한다. <신설 2020. 4. 7.>



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0. 4. 7.>

부 칙 <법률 제17206호, 2020. 4. 7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29조의3제1항, 제29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,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도 적용한다.

제3조(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)

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2

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,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"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"은 "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"으로,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"아동학대전담공무원"은 "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"으로 본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4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6. 5. 29., 2019. 1. 15., 2020. 3. 24.>

제1호 ~ 제25호(생략)
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 <제17087호, 2020. 3. 24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특례)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, 제12조(제4항 후단 중 경찰관서의 장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송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, 제15조, 제47조, 제50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은 "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"으로, "아동학대전담공무원"은 "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"으로 본다.